

학교기업 운영세칙

개정 2019.05.10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학교기업의 운영에 대하여 학칙 제5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 기업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5.10>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규정은 [해전베이커리, 해전카페테리아] 등의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<개정 2019.05.10>

제3조 <삭제 2019.05.10>

제4조 (지원부서)

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교기업의 설치·폐지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 및 관리
3. 학교기업의 평가
4. 학교기업 관련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5조 (소재지)

학교기업은 본교 내에 둔다.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교지 및 교사 밖에 둘 수 있다.<개정 2019.05.10>

제2장 <삭제 2019.05.10>

제6조 <삭제 2019.05.10>

① <삭제 2019.05.10.>

1. <삭제 2019.05.10.>
2. <삭제 2019.05.10.>
3. <삭제 2019.05.10.>
4. <삭제 2019.05.10.>

- 5. <삭제 2019.05.10.>
- 6. <삭제 2019.05.10.>
- 7. <삭제 2019.05.10.>
- 8. <삭제 2019.05.10.>
- 9. <삭제 2019.05.10.>
- ② <삭제 2019.05.10>

제7조 <삭제 2019.05.10>

- ① <삭제 2019.05.10.>
 - 1. <삭제 2019.05.10.>
 - 2. <삭제 2019.05.10.>
 - 3. <삭제 2019.05.10.>
 - 4. <삭제 2019.05.10.>
- ② <삭제 2019.05.10>
- ③ <삭제 2019.05.10>

제8조 <삭제 2019.05.10>

제3장 조 직

제9조 (조직)

- ① 학교기업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학교기업 책임자 1인을 둔다. 책임자는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임면한다. 책임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지원부서의 직원은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학교기업의 책임자인 교수의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③ 학교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산, 경영, 판매, 관리 등을 담당하는 설립운영 부서 전담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, 종업원 채용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책임자가 정한다.
- ④ 학교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속 학생이 참여할 수 있으며, 학생들의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제4장 운영위원회

제10조 (설치)

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 (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기업의 운영 기본정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2. 학교기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학교기업 예·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4. 학교기업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관련 학과 및 전공의 현장실습 교육에 관한 사항
6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12조 (구성)

-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산학협력단장, 교육혁신처장, 학생역량지원처장, 학교기업 책임자를 포함하여 교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9.05.10>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 (회의소집 및 의결)

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현장실습

제14조 (현장실습산업체 선정)

-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-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종업원의 수 및 인적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제15조 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

총장은 당해 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. 다만, 학기당 인정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6장 회계<개정 2019.05.10>

제16조 (수입)

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해전대학교산학협력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물품판매, 용역제공, 기술이전 등의 수익금
3.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 등

제17조 (지출)

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시설·운영지원비
2. 관리운영비
3. 운영에 기여한 교직원 보상금 및 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
4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경비
5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제7장 <삭제 2019.05.10.>

제18조 <삭제 2019.05.10.>

- ① 삭제<2019.05.10>
- ② 삭제<2019.05.10>
- ③ 삭제<2019.05.10>
- ④ 삭제<2019.05.10>
- ⑤ 삭제<2019.05.10>

제19조 <삭제 2019.05.10>

- ① <삭제 2019.05.10>
1. <삭제 2019.05.10>
2. <삭제 2019.05.10>
3. <삭제 2019.05.10>

제20조 <삭제 2019.05.10>

- ① <삭제 2019.05.10>
- ② <삭제 2019.05.10>

제21조 <삭제 2019.05.10>

- ① <삭제 2019.05.10>
1. <삭제 2019.05.10>
2. <삭제 2019.05.10>
3. <삭제 2019.05.10>
4. <삭제 2019.05.10>

② <삭제 2019.05.10>

제8장 회계처리

제22조 (회계처리)

- ① 학교기업 책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수입, 지출,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나타나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며, 산학협력단회계 담당자는 산학협력단회계와 학교기업회계를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운영계산서, 현금흐름표로 한다.
- ③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.

제23조 (회계직원)

- ① 학교기업 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, 수입과 지출 담당자를 둘 수 있다.
- 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수입과 지출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을 경우, 산학협력단의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담당토록 할 수 있다.

제9장 보상금 지급

제24조 (보상금 지급)

- ① 총장은 학교기업 결산 결과 운영성과에 따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% 범위 내에서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연간 보상금 총액이 교직원의 보수총액을 넘을 수 없다.
-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, 학생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제10장 감사

제25조 (감사)

감사는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5조(감사)에 따른다.

제11장 폐지

제26조 (폐지)

- ①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본 대학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다.
- ② 폐지되는 학교기업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